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10. 23.(수) 09:3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47차 및 제4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안건 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5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 (2019-51-281~283)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제한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 및 시정권고(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인하여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주)씨엠비에 대한 시정조치(안)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 (주)현대에이치씨엔,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시정권고(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8년 10월~12월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사 계열에 과다 지급한 3개 사업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서 7월까지 자료 분석 및 사실 관계소명을 받았고, 9월에 시정조치(안), 시정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주)씨엠비의 가입자 수는 156만여명, 방송 매출액은 1,285억원입니다. (주)현대에이치씨엔의 가입자수는 129만여명, 방송 매출액은 2,052억원입니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는 427만여명, 방송 매출액은 5,551억원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자사 계열

PP에게 과다 지급한 (주)씨엠비, 이하 피심인①이라 합니다. (주)현대에이치씨엔, 이하 피심인②라고 합니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이하 피심인③이라 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입니다. 조사방법입니다. 다른 PP에 대한 수익 제한 여부는 지상파·중편·CJ ENM 계열 PP 및 보도 PP를 제외한 일반 PP를 대상으로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피심인①입니다. 일반 PP의 수익 제한과 관련하여 피심인①은 자사 계열 PP에게 MSO 평균보다 약 2배가량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1위 MSO 사업자인 씨제이헬로보다 자사 계열 PP에게 약 3~8배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씨엠비는 CJ헬로보다 가입자가 260만 이상 적고, 연간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 규모는 500억원 이상 적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①이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은 MSO 평균보다 9.2~18.7% 낮으며, 씨제이헬로보다 13.8~26.7%가 낮습니다. 피심인①은 '어린이TV'에게 MSO 평균 지급액의 10%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일반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널 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동일한 'Edge TV'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55% 삭감하였습니다. 평가점수가 유사한 동일 장르의 채널 중 일반 PP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낮게 적용하는 등 자사 계열 채널과 비 자사 계열 채널 간 편차가 심하였습니다. 'TV Asia'가 66점, 'HQ PLUS'가 68점, 'Sky Drama'가 65점이었는데 자사 채널인 'TV Asia'에게는 8.1억원을 지급하고 자사 계열이 아닌 'HQ PLUS'에게는 1.5억원, 'Sky Drama'에게는 0.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②입니다. 피심인②가 자사 계열의 기타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은 MSO 평균보다 2.72%~3.35% 낮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사 계열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변동 폭 과다 부분입니다. 자사 계열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자사 계열 PP에게 임의로 배분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피심인③입니다. 자사 계열 PP 외 기타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은 MSO 평균보다 6.86%~8.65%가 낮았습니다. 피심인③의 계열 PP 시청 가능 가구는 428만 가구로 MSO 평균 144만 가구보다 284만 가구가 많고, 가입 가구는 436만 가구로 MSO 평균 253만 가구보다 183만 가구가 많았습니다.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881억원으로 MSO 평균보다 373억원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널 평가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건입니다. '빌리어즈TV'의 평가점수가 '16년, '17년 71점으로 동일하나 '17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20% 삭감하고, '18년도에는 점수가 53점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대비 205% 인상하는 등 피심인③이 채널 평가 점수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자의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①입니다. 계열 외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이 MSO 평균보다 9.22%~18.75% 낮게 나타났으며, '어린이TV'에게 MSO 평균의 10%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TV Asia' 66점, 'HQ PLUS' 68점, 'Sky Drama' 65점과 같이 채널 평가 점수가 유사함에도 자사 계열 PP인 'TV Asia'에게 8.1억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반면, 다른 일반 PP인 'HQ PLUS'와 'Sky Drama'에게는 각각 1.5억원, 0.9억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자사 계열 PP와 비자사 계열 PP를 차별하였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 PP의 수익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기정통부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허가조건 준수 여부, 타 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 평가결과가 유사할 경우 산출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협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가 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PP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적게

책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PP의 적정한 수익 배분을 제한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II.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심인②입니다. 피심인②가 '15년~'18년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이 MSO 평균보다 2.72~3.35% 낮았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사업자의 협상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심인③입니다. 피심인③이 일반 PP에 지급한 비율이 MSO 평균보다 6.86%~8.6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피심인③의 계열 PP의 시청 가능 가구는 428만 가구로 MSO 평균 144만 가구보다 284만 가구가 많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 규모가 MSO 평균보다 343~373억원이 많음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다른 PP사업자의 적정한 수익 배분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피심인①과 씨제이헬로를 보면, 피심인 계열 PP에게 지급한 사용료 비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씨제이 계열은 현재 PP가 19개 있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씨엠비는 조사할 때 4개였지요?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씨제이헬로 계열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씨제이헬로 계열PP가 19개인데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4페이지에 나타난 것은 씨제이헬로가 씨엠비 계열 PP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상대적으로 씨엠비가 자사 계열 PP에게 많이 지급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사업자 측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지금부터 ‘㈜씨엠비’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 점검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씨엠비’가 자사 계열 PP 채널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다른 일반 PP의 적정한 수익 배분을 제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씨엠비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인 ㈜씨엠비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씨엠비 대표이사 김태울 님 맞습니까?

○ **김태울 ㈜씨엠비 대표이사**

- 예.

○ **한상혁 위원장**

- ㈜씨엠비 전무이사 김대환 님 맞습니까?

○ **김대환 ㈜씨엠비 전무이사/편성책임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씨엠비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김태울 대표이사님께서 3분 정도 발언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울 대표님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울 ㈜씨엠비 대표이사**

- 안녕하십니까? 씨엠비 김태울 대표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상임 위원님들께 먼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 씨엠비는 지난 15년 동안 요금인상 없이 오로지 시청자들만 바라보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8VSB 채널수를 아날로그 시절 60여개의 채널에서 최근 170개까지 늘리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55년의 역사를 가진 저희 씨엠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1위라는 영예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자사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시정금액 8억 7,000만원을 공공·공익채널과 일반 PP 채널들에게 성실히 배분한 바도 있습

니다. 저희는 자사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2017년~2018년에 걸쳐 자진 경감해 오고 있었으며, 2018년에는 자사 계열 PP 모두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저희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업무적 과오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정말 어려운 이 자리를 빌려 케이블업계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케이블업계의 절실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케이블의 가입자와 매출은 모두 급감하고 있지만 지상파 CPS의 지속적인 증가로 케이블산업의 존폐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송출채널인 종편채널까지 지난해보다 3배나 인상된 금액을 CPS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상파와 종편의 인상 요구가 지금처럼 그대로 수용된다면 아날로그 요금 수준인 8VSB에 대한 방송서비스 유지 자체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IPTV나 위성 방송 그리고 케이블이 같은 금액의 지상파 CPS를 지불해야 하다 보니 ARPU가 낮고 방송 수신료 매출액이 낮은 저희 케이블TV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경영난의 문제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방송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콘텐츠 대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무분별한 방송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절실한 심정으로 당부 올립니다. 저희 씨엠비는 건전한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많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주)씨엠비 측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4개 PP를 지난해에 전부 다 처분하셨다고 하는데, 처분하신 이유가 과기정통부로부터 행정 처분도 받고 자사 계열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많이 준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김태율 (주)씨엠비 대표이사**

-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PP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희 채널에게 조금 과다하게 줬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른 플랫폼들보다 많이 주고 있었다는 것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들이 다른 채널에 주고 있는 사용료를 얼마 주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5년 동안 플랫폼 사업만 운영해 온 저희 씨엠비 입장에서 콘텐츠 부분에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 경영주가 “그러면 채널을 매각하자”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희 자사 채널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해외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채널에게 많이 주었지만 다른 플랫폼사들은 그 채널에 대한 사용료를 많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채널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 채널에게 사용료를 과다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씨엠비가 원래 SO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법인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예, 11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법인 통합을 하나로 마쳤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러면 통합하기 이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SO별로 따로 집행을 했습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저희 11개 지역이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등 광역시 지역에서 운영되는 것은 괜찮았는데 저희가 전남이나 충남 저 시골 같은 곳에서는 너무나 손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주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너무나 다르고 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분들 질문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논점이 전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조사한 내용은 MSO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고, 어린이채널은 굉장히 낮게 지급했다고 하는 의견인데 지금 피심인께서는 다른 플랫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적게 준 것이고, 따라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린이채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게 준 것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무처에서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에 관해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십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적게 주고 있는지도 잘 몰랐고, 저희의 입장에서 조금만 변명드린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들이 해외 디스커버리나 중화권의 TVB 민영방송이나 또 TLC나 디스커버리에서 운영하는 해외채널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방송시장조사과에서 조사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받아봤지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럴 수도 있었다는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과기정통부가 2017년 11월에 시정명령 내린 것은 2016년도분에 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조사를 했었던 것은 '17년, '18년 양쪽 다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결과, 통보받은 내용에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예, 인정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말씀이지요?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MSO들끼리는 개별 PP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얼마 정도씩 주고 있는지 서로 알지 못하는 구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물론 영업비밀이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개별 PP들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분명히 개별 PP들이 예를 들어 '우리는 씨제이헬로에 얼마를 받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또는 과소 지급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채널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PP들이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도 다른 플랫폼에게 저희가 다른 채널들에게 얼마를 주고 있다는 것이 공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공표는 안 되지만 협상을 하다 보면 '너무 부당하다' 이런 컴플레인을 받지 않습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럴 경우 상대방이 이야기할 테니까 대개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사 계열 PP에게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과다하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보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안이하게 숨기고 싶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과거 정통부에 매년 채널에 대한 이용약관을 넣을 때 채널사들이 어떤 일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채널번호를 바꾼다거나 사용료를 낮춘다거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하지 못했다면, 채널사들이 도장을 한 군데라도 찍어주지 않는다면 그 해에 채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 예전에는 SO 플랫폼사들이 PP사들에게 갑질행위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을 많이 개혁하고 혁신하면서 채널사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대한 합의도장이 없으면, 170개 채널 중 한 군데라도 채널에 대한 도장이 없으면 저희는 그 해에 채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PP들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저희가 다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장을 받고 채널 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결론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사용료를 총액으로 한해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전체 방송수신료 매출액의 PP만 47% 정도 260억원 정도 나가고, 종편과 지상파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다 보면 67%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매출액 중에?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방송수신료 매출액 중 68%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인데,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런 돈의 액수가 빠져나가는데 씨엠비 자체 내에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액 규모 등 전부 굉장히 주요한 전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에게 얼마를 주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 PP에게 우리가 과다 지급하는지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궁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더 설명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씨엠비가 그런 전략도 없이 큰 MSO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전부 개개 협상력에 의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또 그것이 과다한지 부당한 것인지 그런 판단도 못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쭙보는 것입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저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돌이켜 보면 수신료 배분 정책들에 대한 과기정통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방송매출액의 25% 이상을 줘라, 또 2013년도까지는 방송매출액의 25%~28%까지 줘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준수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어떻게 채널사에 배분하고 있는지는 저희의 부족함에, 정보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들 인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문제라고 생각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채널사업을 다 접기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4개 채널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철두철미하게 다른 채널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더 정확히 인지해서 제도를 제대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건은 특정 자사 계열 PP에 수신료를 많이 지급했느냐, 아니냐, 아니면 독립 PP, 군소 PP에 대해 PP사용료를 적게 줬느냐, 이 문제보다도 전체 방송생태계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하고 제재하는 대상기간은 특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됐든 그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작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것을 조사하였습니다. 한 기관에서 했다면 한꺼번에 했겠지요. 그리고 한 번에 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저희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에서 조사하기

전에 저희는 벌써 4개 채널에 대한 정리를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벌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 정책권의 조정 문제는 정부 내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송정책에 대한 기능들이 한 기관에 있었다면 작년에 한꺼번에 다 조사하고 행정처분하고 끝내야 할 일들입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두 번에 걸쳐 한 것들은 뭔가 정부조직 기능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방송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수신료 파이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지상파들과 CPS 협상해서 인상되는 금액에 비하면 수신료는 일반 PP에게 돌아가는 현재 현실적으로 인상이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 지상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지상파에 대한 시청률, 또 플랫폼에 대한 매출액 대비해서 CPS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지상파 CPS나 종편 수신료, 또 PP들에 대한 수신료가 계속 증가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매출액 중 68%를 지급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CPS 요구가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저희가 전체 방송매출액의 90%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저희 케이블이 25년 되었고 유료방송으로 55년 되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정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이렇게 조사하고 제재하되, 그다음에 제도개선까지 이어져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신료 파이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상파에 대한 CPS가 협상에서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종편 PP에 지급되는 수신료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PP들에게 지급되는 것, 여기에서는 계열 PP나, 군소 PP에 대해 차등 지급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PP에 대해 지급되는 수신료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SO의 수익을 줄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채널사들과는 매년 채널 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만약 수신료가 낮아진다면 채널번호가 뒤로 밀린다면 그 채널사들이 저희와 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낮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채널이 계속 늘어나고 수신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PP사가 수신료를 5,000만원 받는데 3,000만원만 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채널사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에 대한 PP 사용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잘못해서 저희 자사 채널에 주었던 채널수신료는 경감했지만 아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채널 자체도 없앤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 없는 개별 PP라 할지라도 일단 계약을 하면 해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네, 안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혹시 저희가 조사했던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이처럼 계약해지가 쉽지 않은 현실을 악용해서 보통 몇몇 PP들의 경우 제작은 물론 거의 프로그램 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방, 4방 그리고 매달 재방하는 그런 패턴들로 채널을 운영하는 PP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조사했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정말 제가 이쪽 케이블업계에서 2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95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물론 예전 초기에는 SO라는 사업이 PP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갖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이라고, SO라고 지금은 절대 값이 아닙니다. 절대 값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채널은 2012년도에 만들었던 스포츠중계권을 2019년에 방송하는 채널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저희가 평가를 내리서 사용료를 줄이겠다고 하면 도장을 안 찍어줍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채널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채널사업 접자, 이것이 큰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해외에 채널을 만들었던 것은 디스커버리나 중화 채널들을 통해 국내 콘텐츠를 그쪽에 내보내서 대한민국 콘텐츠를 해외에 내보내자는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어렵고 채널운영 자체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자칫하면 저희가 크게 이익을 보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자' 그리고 정말 더 정확하게, 지금 저희는 정리했지만 그 채널 수신료를 다른 채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됐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토로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케이블 플랫폼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MSO 대표자가 나오시기 쉽지 않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CPS 관련해서 지상파와 CPS 협상할 때 매번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 김태율 ㈜씨엠비 대표이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지상파가 VOD 공급을 끊어버린다거나 해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면 방통위가 개입하고, 지금 보시기에 지상파 계열 PP가 아니고 지상파 CPS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나름 제도 개선이나 중재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태율 (주)씨엠비 대표이사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상파 CPS에 대해 2016년도 케이블 매출액에서 거의 19.6%가 지상파 CPS로 나가고 있습니다. IPTV는 14%에서 11%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IPTV 매출액이 1조 5,000억원으로 올랐고, 저희 케이블TV는 6,400억원에서 5,000억원대로 매출액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CPS는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파 CPS를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SO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나 오를지도, 얼마나 비율적으로 맞출지 저희는 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PP는 28%, 30% 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종편은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무송출채널인데도 저희가 수신료를 주고 있고, 그것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플랫폼사업자들은 가입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가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디어가 발전하려면 그런 포괄적인 정책이 나와 주어야 플랫폼사업자들도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매출 중 50%는 프로그램 사용료로 나누어줄 테니 거기에 지상파와 종편과 PP 사업자들이 나누어서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 살고 어디가 죽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OTT들이 들어오고, 전체 미디어 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파나 종편이나 PP들이나 플랫폼사업자들이 동반성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소송으로, 저희가 그동안 지상파와 소송이 80건이 넘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몇 백억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셔서 방송통신에 대한 미래를 포괄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주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케이블업계의 사정이 하향 추세이고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8VSB 말씀하셨는데 8VSB가 아날로그의 보완재나, 아니냐는 것은 최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문제가 되고, SO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사용료 협상에서 아마 틀림없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씨엠비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PP마다 어떻게 주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데, 우리 조사에 따르면 다른 MSO들 평균 지급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PP가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PP 이름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것은 잘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태율 (주)씨엠비 대표이사

-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말씀 다 나누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씨엠비 측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율 (주)씨엠비 대표이사

-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드리게 되고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씨엠비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관계자 퇴장)

조사도 마쳤고 진술도 들었으니까 이어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시정조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①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입니다. 피심인①에 대해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등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 하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법령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금액을 삭감하는 계약 금지 등 일반 PP의 수익 제한 방지대책 등 개선 방안 마련,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기간 및 고지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입니다. 피심인①에 대해서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징금 산정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금액과 추가적 조정 금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금지행위를 마친 날의 이전 연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매출액은 1,287억원입니다. 부과기준율입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매우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으로 나누어집니다. 본 건의 경우 피심인①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제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료는 피심인 일방이 아닌 PP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과거 방통위로부터 동일 행위로 처분받은 사례가 없으며,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과거 과징금 처분 사례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피심인이 자사 계열 PP를 2차에 걸쳐 모두 매각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과거 과징금 처분 시 동일 행위에 의하여 처분받은 사례가 없을 경우 부과기준율을 0.1%로 하는 경우가 5회, 또는 0.2%로 한 경우가 2회 있음을 고려하여 0.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적 조정입니다. 피심인①의 위반행위 기간은 2년 초과에 해당되어 50%를 가중하였습니다. 추가적 조정입니다.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감경이 가능합니다. 추가적 가중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①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자사 계열 PP를 모두 매각 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과기정통부 행정 처분으로 중소 PP에게 8.8억원을 추가 배부하였으므로 조사 협력 20% 이내, 재발방지 조치 도입 30% 이내, 기타 10% 이내의 감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1안>입니다. 조사협력 20%, 재발방지 조치 도입 20% 등 총 40%를 감경하는 안입니다. <제2안>입니다. 조사협력 20%, 재발방지 조치 도입 20%, 기타 10% 감경 등 총 50% 감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징금입니다. ㈜씨엠비 에게 40% 감경 시 1억 1,500만원, 50% 감경 시 9,65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합니다. 시정 권고(안)입니다. 피심인②에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법인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사용료는 개별 PP의 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함입니다. 피심인③입니다. PP별 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권고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과징금 부과 내역에 대해 같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점검 결과, 자사 계열 PP에게 과다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서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행위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결정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반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방송법에서 방송사업자 간 거래 시 수익 배분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유료방송사업자가 PP의 주된 재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해서 자본금이나 인력 면에서 자원이 부족한 상당수 국내 PP들의 안정적 제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이 MSP 체제, 즉 복수의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 겸업 체제로 진화함에 따라 MSO가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의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계열 PP를 우대하는 차별적 행위를 금지해서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심인들의 위반사항을 보면 씨엠비는 자사 계열 PP에게 MSO 사업자 평균보다 약 2배가량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했고, 같은 기간에 자사 계열 외 일반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이 MSO 사업자 평균보다 9~18%, ㈜씨제이헬로보다는 13~26% 과소 지급했습니다. 또한 어린이TV에게 MSO 사업자 평균 10%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널평가 점수가 비슷하면 동등한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협상 때 자사 계열

PP와 다른 PP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 수익 배분을 제한했습니다. 피심인 씨엠비의 이러한 행위는 방송법 제8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행위의 중지 이외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처가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하면서 0.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반기간 2년 초과에 해당하므로 50% 가중하되, 추가적인 감경안에 대해 40% 감경안과 50% 감경안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 감경안에 대해 <제1안> 40% 감경안을 제시합니다. 씨엠비가 공익채널과 하위 중소 PP 32개사에 대해 8억 7,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과기부의 행정처분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 그리고 계열 PP 4개사를 매각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한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과기준율을 정할 때 0.2%보다 낮은 0.1%를 적용했기 때문에 추가 감경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경제별이라는 과징금 부과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과거의 감경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2015년까지 총 8회의 처분 중 7차례나 40%를 감경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향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시 개별 PP의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시정 권고하는 안에 대한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의 적정 지급에 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의 점검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도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금지행위 위반의 징후가 있을 때는 현장조사를 통해 방송채널 유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위원님은 원안에 대부분 동의하시고,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40%를 감해 주는 <제1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음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을 다 수용하면서 아까 SO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혹시 50% 감경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사 기간, 대상 등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까지 사무처에서 충실히 조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실조사 내용이나 현재 행정

처분, 시정명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무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부분인데 여기에서 1안과 2안이 10% 차이 아니겠습니까? 감경이 40%냐, 50%냐인데 저는 조사 협력한 것, 그리고 계열 PP를 다 처분해서 재발방지를 한 것들이 다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행정처분으로 중소 PP들에게 수신료 8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배분한 것들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책권이나 감독권이 한 기관에 있었다면 실제로 조사할 때 한꺼번에 다 조사가 되고, 행정처분 했을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디어 생태계나 SO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감안한다면 저는 기타로 10% 더 추가해서 <제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맞은편에 앉아계신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님이 저와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 MSO 가운데 씨엠비가 사실은 규모가 제일 작은 곳이지요?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5개 회사 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원래 회의 들어오기 전에 40%로 생각했는데 쪽 설명도 들어보니 50% 정도로 해서 1 억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수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결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 **한상혁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료방송 관련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실은 이 가이드라인이 현재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료 문제를 특정해서 보면 자사 계열 PP들과 일반 PP들을, 특히 군소 PP들을 차별해서 수신료를 지급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견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보면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제도의 불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파와 CPS 협상하는 것, 물론 지상파 쪽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광고매출 급감하고 시청률 떨어지다 보니까 또 그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나 지상파 쪽에서 다른 경영혁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근본적인 경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의 파이가 정해진 상태에서 광고매출의 하락을 수신료에서 충당하려는 시도들이 현재 분명히 있습니다. 또 CPS 협상 관련 법원 판결을 보면 8VSB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날로그로 분류하지만, 저작권법으로 보면 저작권자인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인정해서 일정 정도 협상해서 하라고 사업자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계열 PP와 일반 PP를 차별하지 마라, 군소 PP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예를 들어 메인인 지상파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홈쇼핑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 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적,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사업자의 유불리를 떠나서 최소한 정부가 공정하게 그런 룰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방송분쟁조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자들에게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해 주어야 하는데 솔직한 말로 깔끄러운 것들에 대해 저희가 손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 환경들을 잘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중재자로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송 시장조사과뿐만 아니라 전체 사무처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의견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사무처에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되, 과징금 부과는 <제2안>인 50%를 감경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51-284)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재허가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재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경과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위원회에 동 개정안을 보고드렸고, 6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7월 17일 내부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 단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신설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현재도 허가·재허가 심사결과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행 조건을 부과한다든지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기간 단축근거 신설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규제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허가 심사 시 공정경쟁과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항목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검토의견은 유효기간 단축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또한 허가 거부, 허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근거 신설조항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편의 경우에도 허가 기간이 2년 단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방송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심사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통해 11월 14일 정도 차관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달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방송광고판매 미디어랩사의 공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재허가 심사를 통해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재허가 심사 과정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사업자의 의견은 법률에 근거한 대국민 약속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방송사와 미디어랩사는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인해 방송광고의 영업환경은 어려워지고 사업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허가 심사를 통한 사후규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경쟁,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2년 이내에서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 측면과 방송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규제 신설 강화라는 사업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대로 의결된 것은 법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하면서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상혁 위원장**

- 이 내용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준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9-51-285~290)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이용자정책국 안건인 <의결안건 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담당 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결주문입니다. ‘(주)기창인포텍, (주)편진, (주)카루, (주)에스에이치네트웍스, 캐롯(주)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 주요경과입니다. 2019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허가 신청접수를 실시한 결과, (주)기창인포텍 등 총 6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의 주요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9월 24일 운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기준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주)기창인포텍 등 총 5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주)에이치는 총점 70점 미만으로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허가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는 <붙임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올 들어 세 번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3차 심사에서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의 소명이 필요하고 설비투자계획이 미진한 사업자 한 곳을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유료 경쟁체제 구축 의지를 우리 위원회가 분명히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경쟁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되, 개인위치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허가 심사를 통보한 5개 사업자를 보면 RFID 수집 사업자 2개사, GPS 수집 사업자가 2개사, LTE 신호 수집 사업자 1개사로, 또한 서비스 내용도 자녀 안심 알리미 서비스나 차량 관련 서비스로서 기존 허가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 영역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조금 더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용어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연구반 회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용어를 반영한 것으로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개정된 용어와 일부 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조에서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접속기록 최소 보관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상 접속기록의 보관기간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존기간이 늘어나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존관리기간의 확대는 보고한 바와 같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 고시와 동일한 기간을 부여해서 규제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수반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다소 있기 때문에 행정예고기간 중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잘 아시는 대로 현재 LGU+의 CJ헬로 인수, 그리고 SK의 티브로드 합병이 진행됨으로써 플랫폼사업자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합병의 경우는 당연히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이고,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 미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수는 합병이든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사전에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법 미비사항은 앞으로 보완되어야겠지만 그에 앞서서 사업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LGU+의 CJ헬로 인수의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살펴봐야 할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등 이런 정책 목표에 대한 의견서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견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합병과 달리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 절차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고, 입법화되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의 공식적인 의견 형식으로 제시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상관없고, 제가 다 끝나기 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건 관련입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표 위원님 말씀 주신 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방송사업자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지만 MSO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상 정부기관 두 부처에서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부부처 간 업무 조정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이중제재를 당하는 사업자들의 불만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고, 특히 방송시장이 이렇게 재편되는 데 따른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역성 강화나 또 방송 공적 책임, 공익성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처인 방통위 의견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과기정통부에서 주식인수의 경우 과기정통부로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하루

빨리 입법 미비사항이 보완되고, 아니면 적어도 과기정통부에서 우리에게 입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의견을 구하는 절차라도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저 역시 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또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무처에서 관련된 시장 상황들을 면밀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병과 주식인수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 미비로 인한 형식적인 분리로 주식인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A를 통해 방송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SKT가 WAVE를 통해 출자한 것 외에도 결국은 시장이 통신사 주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된 준비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M&A의 활성화 그리고 시장 전체에 있어서 경쟁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독과점으로 흘러갈 우려와 문제점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와 또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사무처에서 지켜보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건은 이견 없고 다른 것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견지해야 할 가치, 추구해야 할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담아서 제시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까 씨엠비 제재 건에 대해 이중적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절차적 부담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부과된 과징금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중 제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또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으로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제가 처음 방통위원으로 들어올 때도 정치적으로 대단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또 나갈 때도 5년 5개월 했으니까 조용히 나갈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제 사의가 곡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엇그제 국정감사에서 뜻하지 않게 어느 의원님께서 제 거취를 물어보셨는데, 당시 국감장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도 없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바로 국감 끝나고 한밤중에 SNS에 제 입장을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순수하게 제 뜻을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는 시각, 그다음에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년 5개월 공직에 근무하고, 나가는데 꽃길을 열어주지 못할망정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씀 못 드렸습시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5개월 남아 있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5개월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과 그리고 내년도에 방통위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연초에 제 후임을 둘러싸고 그리고 부위원장님 후임도 있습니다만 연초에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정부 측 위원으로서 조직 관리에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고, 차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 거취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분기당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도 있었고, 또 여름 무렵에도 있었고, 추석에도 있었고, 또 이번까지 거론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아시는 기자 분들께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의 사의 표명과 제 후임자가 누가 되는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직으로 5년 5개월 이렇게 근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참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언제 나갈 것이냐, 사실 정무직은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나갈 때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이유는 정권이 창출되고 정권 초기에 제가 했던 역할, 그리고 인사권자가 기대했던 그 역할을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권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특히 제가 정무직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저의 거취 문제 가지고 남아계신 위원님들이나 방통위라는 조직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방통위 출범에 초석을 놓았고, 또 어느 분들보다 제가 애정이 깊은데 이 조직에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앉아 계신 기자님들께서 방통위를 무한 애정으로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고삼석 위원님께서 특히 거취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참 여러 가지 심경이 착잡합니다. 그 사이 꽤 긴 기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큰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차관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우리 방통위에서 할 일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큰 역할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임기를 채워서 4기 방통위원으로서 다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랐는데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특히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정신에 따라 운영되는 방통위원회는 그중에서도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정부 임명 상임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위원장께서는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석하셔야 하고, 또 정부 임명 상임위원은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말하자면 방통위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임기 도중에 교체가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으로서 착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하튼 위원장께서는 새로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방통위의 중요한 업무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가운데 또 상임위원 한 분이 바뀌어서 앞으로 구도가 바뀌겠습니다만 4기 방통위원회의 업무가 그로 인해 차질이 생기지 않고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마음을 나눌 자리는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간단히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고삼석 위원과 그동안에 제가 4년 넘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사에 대단히 합리적이시고 또 업무에 정통하셔서 저희 방통위에 정말 큰 힘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시니까 대단히 애석합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제8조 신분보장을 보면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또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것은 그만큼 국민생활과 밀착된 우리 방송통신 업무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신껏 일을 하라고 해서 임기가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표 위원님 말씀처럼 5명 중에 두 분이 중간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 일이 방통위 설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방통위 설치법의 입법정신이 혹시나 훼손될까 봐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항간에 또는 보도에 소위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인력을 보강한다, 이런 차원이라면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할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앞으로 많은 충돌이 빚어질까 하는 걱정을 야당 추천 위원으로서 하게 되는 것, 그런 걱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본인이 사의를 직접 표명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고, 나가시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저희들과 조금 더 길게 호흡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우려 충분히 들었고, 하지만 누차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우려하시는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고 위원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는 별도로 마련해야겠지요. 그런 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기회의는 여러 일정들을 고려해서 11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폐회】